

● 보험가입대상

다음 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

1.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점두품, 저장품)
2. 자동차(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한 중기 포함), 선박, 항공기
3. 공장내에 장치된 기계(리스(임대)전문업자의 리스물건 제외)
4. 특정구간 운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5. 특정장소내의 가재포괄계약
6. 동물, 식물

● 담보위험

- 1) 화재위험, 도난위험, 파손위험, 폭발위험, 잡위험을 기본위험으로 하며, 잡위험은 잡위험부담보 특약으로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

● 보상하는 손해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화재,파손,폭발,운송중의 손해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절대적 면책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동거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전쟁, 변란으로 인한 손해
4. 국가 또는 공단체의 압류, 몰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녹, 곰팡이, 변질 등으로 인한 손해
6.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7. 핵연료의 물질 또는 오염된 물건의 방사선, 폭발성에 기인하는 손해
8. 보험의 목적을 가공하였을 경우 가공착수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잘못으로 인한 손해
9. 사기, 횡령 . 망실, 분실

- 2) 상대적 면책-특약으로 담보할수 있는 위험

1. 수리, 청소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인한 손해
2. 전기적 사고, 기계적 사고
3. 지진, 분화
4.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